

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
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
니다.

2023. 8. 18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장애인의 인지·신체 능력 부족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
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바 자문, 상담 등 지원과 장애인 시설의
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인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단위 협
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

=>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

나. 장애인 보호, 상담,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의2 신설)

다. 피해장애인 보호(안 제6조의3 신설)

라.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(안 제9조의2 신설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8. 18.~8. 25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”를 “담양군 장애인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”을 “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“장애인 범죄”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.

4의3. “장애인 거주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방지하고,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”를 “방지하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”을 “장애인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차별금지 및 인권보장”을 “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, 제3호 및 제5호 중 “차별금지 및 인권보

장”을 각각 “차별금지 ·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차별금지 및 인권보장”을 “차별금지 ·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·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, 상담,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, 수사기관, 의료기관,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피해장애인 보호)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인권침해 ·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
2. 인권침해 ·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
3.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· 심리상담 등 지원 · 연계
4.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제7조 중 “차별금지 및 인권보장”을 “차별금지 ·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 중 “차별금지와 인권보장”을 각각 “차별금지 ·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차별 및 인권침해”를 “차별 ·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시설점검 등)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차별금지 및 인권보장”을 “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 피해 예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 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 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담양군 장애인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 죄피해 예방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“장애인 범죄”란 「장애 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 다. 4의3. “장애인 거주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

5. (생략)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) ① (생략)

② 장애인을 비롯한 담양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담양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)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

말한다.

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방지하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-----

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장애인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
-----.

③ ----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--.

제5조(기본계획) ① -----
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
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(생략)
3.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(생략)
5.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

③ (생략)

제6조(시행계획)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신설>

-----.

② -----.

1. ---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시행계획) -----
----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-----.

제6조의2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, 상담,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, 수사기관, 의료기관,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7조(예산의 지원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·홍보) ① 군수는 군 소속기관,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,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가정, 학교,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

제6조의3(피해장애인 보호)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인권침해·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
2. 인권침해·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
3.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·심리상담 등 지원·연계
4.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제7조(예산의 지원) -----
----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
-.

제8조(교육·홍보) ① -----

----- 차별금지·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차별금지·인권보

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
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
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군
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·
배부할 수 있다.

제9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정책
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
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
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
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자문) ① 장애인 차별금지

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차별금지·인
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-----

-----.

제9조(실태조사) ① -----

--- 차별·인권침해 및 범죄피
해 -----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시설점검 등) ① 군수는
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·인권
보장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
하여 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
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
하여야 하며, 점검에 필요한 인
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
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
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
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
한다.

제10조(자문) ① ---- 차별금지·

및 <u>인권보장</u>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② (생략)	<u>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</u>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